

# 역내산이 된 진도 맛김

## 1. 기업 및 제품소개



- H사는 2000년에 설립된 종업원 30여명의 소규모 업체로 조미김, 김밥김 등 해조류를 가공하여 수출하며 수출 실적이 2012년 인증수출자 인증 후 매년 괄목할만하게 증가하고 당기순이익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

단위 : 천불

### 수출실적

HS (품명)	2011		2012		2013		2014.6	
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
1212.21-1010 (건조김)	5	27	14	945	15	806	7	764
2106.90-4010 (조미김)	11	98	17	297	35	689	32	699

## 2. FTA 활용전 상황

- 2010년, 2011년 총 수출은 각각 142천불(11건), 125천불(16건)으로 주로 내수에 치중, 주로 수출업체에 납품하여 직접 수출실적은 미비
- 2012년 해외로 판매시장을 확장함에 따라 필요에 의해 원산지 인증 수출자 인증을 득함.
- 동사는 국내 김 생산자로부터 물김을 공급받아 자회사인 ○○○푸드에서 건조김을 가공한 후 건조김을 공급받아 수출하거나 조미한 후 수출



### 3. 장애 요소

- 마른 김은 각 FTA 협정의 원산지 결정기준에서 규정한 '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'을 입증할 근거자료 확보 어려움
  - 공장에서 제조되는 물품은 원재료 공급 시 생산자가 발급하는 원산지 (포괄)확인서 등으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하나 어업인 발급 원산지 (포괄)확인서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
  - 1차 산물인 '김'의 경우 물김의 국내 생산자로부터 국내 재배, 수확, 채취를 입증 할 근거서류가 무엇인지와 근거서류의 확보가 어려움.

조미김의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

체결국	결정기준
페루	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(제 1211.20 호의 것, 제 1212.20 호의 것, 또는 제 1302.19 호의 인삼 제품을 제외한다 ) 에서 변경된 것
아세안	40%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. 다만, 제1211.20호, 제1212.20호 및 제1302.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.

\* 건조김은 완전생산품이어야 하고 아세안, 페루 FTA에서 조미김의 재료로 사용되는 '김'은 완전생산품이어야 함.

- 체결국별 품목분류 상이로 품목분류에 어려움
  - '김'은 제조 공정에 따라 건조김(HS 제1212.20호 2007기준), 구운김 (HS 제2008.99호), 조미김(HS 제2106.90호)에 각각 분류되나 EU에서는 조미김이 HS 제2008.99호에 분류

### 4. 극복 방법

- 1차 산물의 국내 생산 근거자료 확보
  - 우리나라에서 김 양식을 하는 어업권이 있는 어업인(어촌계)은 당해 지역 수산업협동조합(이하 수협)과 계약을 체결하여 수협에서 위탁 판매를 실시한다는 수산업계 현황을 파악
  - 면허가 있는 어업인(어촌계)과 수협의 어업권행사계약서 및 물김의 위탁판매 출하확인서(수협), 수협의 물김 송품장 등을 근거서류로 확보

---

## 5. 활용 효과

- 2012년 이후 매년 건조김 및 조미김에 대한 수출 증가
  - 수출자에 대한 공급을 포함하여 2013년 수출 전년대비 20% 증가
  - 2013년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전년대비 2%, 6% 증가
- 국내생산 완전생산품의 업계 현황을 분석, 각 협정의 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국내에서 생산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지원

## 6. 시사점

- 1차 산업 생산품의 원산지 증빙 방법 체계화로 우리 농어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
- 농어업이 FTA 최대 피해산업에서 FTA 활용산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FTA 시대 농어촌 활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